

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2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8년 10월 17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광역치매센터 사무는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,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및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서
- 나.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지원 할 위탁운영사업자와 재계약하기 위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명 :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운영 민간위탁

나. 시설개요

- 소재지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0 여전도회관 1층(임대)
- 시설규모 : 310.77 m^2
- 현 수탁기관 : 서울대학교병원(2017.4.1.~2018.12.31.)
- 운영인력 : 총 10명(센터장 1 사무국장 1, 팀원 8)

다. 위탁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19.1.1. ~ 2021.12.31.)
- 위탁사무
 - 치매관련 대책수립 및 치매관리사업 기획

- 치매관련 자원조사,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인계 및 기술지원
- 치매관련 종사자 전문교육 및 훈련
- 치매관련 연구사업 및 치매인식 개선사업
- 치매관리법 제 6조에 따른 서울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
- 서울특별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 사업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재계약

○ 소요예산 : 총 854,404천원(2018년)

국비 477,143천원(55%), 시비 377,261천원(45%)

라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
-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 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
-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(운영의 위탁)

○ 민간위탁 추진현황

- '07.01.01.~'08.12.31. : 1차 위탁관리(2년, 서울대병원)
- '09.01.01.~'10.12.31. : 2차 위탁관리(2년, 서울대병원)
- '11.01.01.~'12.12.31. : 3차 위탁관리(2년, 서울대병원)
- '13.01.01.~'15.01.04. : 4차 위탁관리(2년, 서울대병원)
- '15.04.01.~'16.12.31. : 5차 위탁관리(1년9개월, 서울대병원)
- '17.04.01.~'18.12.31. : 6차 위탁관리(1년9개월, 서울대병원)

마. 민간위탁 필요성 및 기대효과

○ 필요성

- 치매관리사업 지원 및 관리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전문성 확보 및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함

○ 기대효과

- 전문적인 사무 운영·관리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치매관리법」 제20조(위임과 위탁)

제20조(위임과 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·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

○ 「치매관리법 시행규칙」 제7조2

제7조2(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위탁)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⑤ 시·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,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5.12.15.]

○ 「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」 제4조

제4조(운영의 위탁)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광역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정신건강의학과, 신경과를 모두 갖추고, 각 진료과목마다 전문의를 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4.5.14>

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(이하 "수탁기관"이라 한다)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5.14>

1.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 또는 단체
2.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
3.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
4. 위탁사무의 관리 및 처리에 드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
5. 그 밖의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

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, 재위탁할 수 있다. 단,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탁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

나. 예산조치 : 총 854,404천원(2018년)

국비 477,143천원(55%), 시비 377,261천원(45%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건강증진과 치매관리TF팀 백현자 (☎2133-7583)